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p>□ 해당조항 :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 해당조항 :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p>	<p>□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p>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579호

가) 예고기간: 2023. 4. 4. ~ 2023. 4.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에서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므로 삭제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총괄관리 및 운영 주체,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변경(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 (안 제4조의2 ~ 제4조의4)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결정 및 징수,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의 내용 중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행정조치 및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및 제11조) 안 제4조에서 시설물 총괄관리자는 군수로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하일 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557호) 심의시 주문한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2. 원안가결